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길영 의원(찬성자 : 19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46 호

다. 발의일자 : 2022. 10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0. 21.

2. 제안이유

가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(2021.9.14.)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대상이 현행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·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50억원)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된 바,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함.(안 제3조제1항제5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)이 개정(법률 제17939호, ‘21.9.14.시행)되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,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기능 중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■ 개정안 검토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,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, 특정공사,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,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</u>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. ~ 11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6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안 제3조제1항제5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현행의 “영 제17조 제2항제3호 가목,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1), 특정공사2),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3),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4)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”을 “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”으로 개정하고 있는데,
- 이는 2021.9.14.일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이 개정((붙임1) 참조)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심의위원회로 위임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대상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(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50억원)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- 다만, 서울시는 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동안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대상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적용((표) 참조)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 바, 향

-
- 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(정의)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“대형공사”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.
 - 2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(정의) ① (생략)
 - 2. “특정공사”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.
 - 3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7조(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”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.
 - 4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7조(정의) (생략)
 - 3. 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”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.

후 이처럼 조례와 시행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.

[표] 공기적정성 심의 신설 이후 심의 내역

(‘22. 12. 16. 기준)

구분	연도	대형공사	특정공사	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	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	합계
상위법 반영 후	2022년	4	-	3	5	12건
상위법 반영 전	2021년	2	1	1	-	4건
	2020년	6	1	1	-	8건
	2019년	-	-	3	-	3건

[붙임] 1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제3조 개정사항

[붙임1]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제3조 개정사항(‘21.9.14. 개정)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17조(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</p> <p>나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<u>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③ ~ ⑩ (생략)</p>	<p>제17조(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총공사비 10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)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⑩ (현행과 같음)</p>